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공일자 | 2016. 2. 4(목)        | 담당자 | 전성주 연구위원                    |
| 홍보담당 | 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 | 연락처 | 02-3775-9039, 010-2125-4760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총 3매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제목 : 일본의 퇴직연금기금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시사점

-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금융사기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수탁자 책임의무 강화, 신탁회사 감시기능 확대, 연기금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 필요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전성주 연구위원,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『일본의 퇴직연금기금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시사점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고령화리뷰 2016년 제6호 테마진단).
- 정부는 2016년부터 퇴직연금 선택폭 확대를 통한 근로자 권리 증진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.
  -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외에 설립된 독립 기금에 신탁하는 우리나라 기금형 제도는 현행 계약형 제도와 병행 실시될 예정임.
    - 기금 운용은 기금 내 노·사 대표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 펀드매니저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임.
- 기금형 제도는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퇴직연금 제도이지만 가입자 보호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.
- 2011년 일본에서는 연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연금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퇴직연금기금이 파산위기에 직면한 'AIJ 사기사건'이 발생함.
  - AIJ 사기사건은 투자자문회사인 AIJ가 연기금들이 위탁한 적립금을 폰지사기 방식으로 모집, 불법으로 운영하여 투자원금 1,458억 엔

중 1,377억 엔(투자원금의 약 95%)의 운용 손실을 입힌 사건임.

- 피해 연기금 수는 총 84개, 피해자 수는 연기금에 가입한 근로자 약 88만 명에 달함.
- 특히, 피해자 대부분이 열악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로 AIJ 사건으로 인해 이들의 연금이 일부 혹은 전액 손실되어 노후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직면하였음.

□ 일본 정부는 AIJ 사기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를 개선함.

- 감시기능강화를 위해 ①금융상품 거래에 있어서 제3자인 신탁은행에 의한 감시기능 강화 ②연기금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품설명 의무 강화 ③투자일임업자에 의한 부정행위 적발시 벌칙 강화 ④ 자산운용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함.
-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①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의무 조항 강화 ②연금사업자 평가절차 개선을 통한 자산관리체계 강화 ③ 연기금 의사결정기구에 의한 사후 감시기능 강화 ④후생연금기금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.

□ 현재 기금형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금융 사기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대리인 문제 방지와 객관적인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, 금융회사의 상품설명 의무 강화 등 가입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음.

- 첫째, 연기금의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규약에서 연기금의 목적과 지배구조,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수탁자 책임의무를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.
- 연기금의 조직을 OECD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의사결정기구와 업무집행기구, 제3자 감시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며, 하부

에 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함.

- 또한 수탁자 책임의무와 관련하여 연기금의 각 구성원별로 신의성실 의무, 충실의무, 분산투자의무, 법령 준수를 명시해야 함.
- 연기금 구성원으로서 범죄자 및 개인파산자 등을 배제하고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OECD가 제시하는 자질과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.
- 둘째, 연금사업자 특성별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함.
  - 일본의 AIJ 사기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연기금의 연금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연기금 구성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상당한 압력과 로비에 의해 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 있음.
  - 따라서,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기금형 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에서 운용관리, 자산관리, 자산운용, 투자일임, 기록관리, 연금계리 등의 특성별 연금사업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정밀하게 명시하는 것이 요구됨.
- 셋째, 기금형 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법률상 일반투자자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금융회사가 상품설명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함.
  -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법률상 연기금의 투자자 분류를 일반투자자로 규정하여 운용손실 위험 고지 등 상품설명 의무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규제당국의 유기적인 감독체계 정립과 신탁회사의 감시기능 확대, 투자일임업자의 연기금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.

<별첨> 테마진단 “일본의 퇴직연금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시사점” 1부. 끝.